

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(제32조의2제2항 관련)

1. 일반적 기준

- 가. 방재관리대책대행자(이하 "대행자"라 한다)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.
- 1)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
 - 2) 「기술사법」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
 - 3)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·법인으로 등록된 기관·단체
- 나.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.
- 다.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.
- 라.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,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,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.
- 마.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.

2.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

- 가.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 1)의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한다.
- 나. 대행자 업무 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필수인력과 다른 종목 또는 전공 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.
- 다. 여러 분야의 대행자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 분야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.
- 1) 필수인력 확보기준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2명 이상 (지진 부	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	

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등록할 때에는 3명 이상)	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.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.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.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. 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	토질 및 기초공학, 수자원공학
	3.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나. 이 표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	토목구조공학

비고: 필수인력은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과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할 때에는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.

2)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

가)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3명 이상	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, 토목구조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 농어업토목기술사, 산림기술사, 지질 및 지반기술사 나. 1)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	토목시공학, 토목구조공학, 도로 및 교통공학, 농업토목공학, 지질 및 지반공학, 산림공학
	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.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.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	토목공학

	이 3년 이상인 사람 다.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.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	
	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이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도시계획학, 도시공학

나)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3명 이상	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, 토목구조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 상하수도 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농어업토목기술사, 산림기술사 나. 1)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	토목시공학, 토목구조공학, 도로 및 교통공학, 상·하수도공학, 건설안전공학, 농어업토목공학, 산림공학
	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)가)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	토목공학

다)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3명 이상	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나. 1)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	도시계획학, 도시공학
	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)가)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토목공학
	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2)가)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도시계획학, 도시공학

라)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3명 이상	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, 토목구조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 상하수도 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농어업토목기술사 나. 1)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	토목시공학, 토목구조공학, 도로 및 교통공학, 상·하수도공학, 건설안전공학, 농어업토목공학
	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)가)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토목공학
	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2)가)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도시계획학, 도시공학

마) 재해복구사업의 평가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3명 이상	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, 토목구조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 상하수도 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농어업토목기술사, 산림기술사 나. 1)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	토목시공학, 토목구조공학, 도로 및 교통공학, 상·하수도공학, 건설안전공학, 농어업토목공학, 산림공학
	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)가)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	토목공학

바) 비상대처계획 수립(풍수해 부문)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4명 이상	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사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, 농어업토목기술사 나. 1)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	해안항만공학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, 건설안전공학, 농어업토목공학

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)가)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	토목공학
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, 건설안전기사, 도시계획기사 또는 2)가)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토목공학, 건축공학,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공학, 도시계획학, 도시공학

사) 비상대처계획 수립(지진 부문)

인원	기술인력	전공 분야
4명 이상	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명 이상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, 도로 및 공항기술사, 항만 및 해안기술사,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철도기술사, 가스기술사,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나. 1)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	토목구조공학, 건축구조공학, 도로 및 교통공학, 해안항만공학, 전기공학, 철도공학, 가스공학, 건설안전공학, 정보통신공학
	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)가)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	토목공학
	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철도토목기사, 전기기사, 가스기사, 정보통신기사, 건설안전기사, 건축기사 또는 2)가)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	토목공학, 건축공학, 철도공학, 전기공학, 가스공학, 정보통신공학